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 19호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유발 심리를 일으키는 취약한 공간을 배제하기 위해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개념 확대하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범죄의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물 등의 설치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 나. 방범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제6호)
- 다. 시장의 책무 보장 (안 제4조)
-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추가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회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전화: 054-537-7841, FAX: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 주 소:
○ 연 락 처:

조 례 안 내 용	의 건 내 용	비 고